

[별표 20]

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(제51조제1항관련)

1. 고체위험물

운반용기		수납위험물의 종류									
종류	최대용적	제1류			제2류		제3류		제4류		
		I	II	III	II	III	I	II	I	II	
금속제	3,000 L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○	
플렉시블(flexible) 합성수지제	3,000 L		○	○	○	○		○		○	
플렉시블(flexible) 플라스틱필름제	3,000 L		○	○	○	○		○		○	
플렉시블(flexible) 섬유제	3,000 L		○	○	○	○		○		○	
플렉시블(flexible) 종이제(여러겹의 것)	3,000 L		○	○	○	○		○		○	
경질플라스틱제	1,500 L	○	○	○	○	○		○		○	
	3,000 L		○	○	○	○		○		○	
플라스틱내용기 부착	1,500 L	○	○	○	○	○		○		○	
	3,000 L		○	○	○	○		○		○	
파이버판재	3,000 L		○	○	○	○		○		○	
목제(라이닝부착)	3,000 L		○	○	○	○		○		○	

비고

1. “○”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.
2. 플렉시블제, 파이버판재 및 목제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수납 및 배출방법을 중력에 의한 것에 한한다.

2. 액체위험물

운반용기		수납위험물의 종류							
종류	최대용적	제3류		제4류			제5류		제6류
		I	II	I	II	III	I	II	I
금속제	3,000 L		○		○	○		○	
경질플라스틱제	3,000 L		○		○	○		○	
플라스틱내용기 부착	3,000 L		○		○	○		○	

비고: “○”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.